

의안번호	2208817
의 퇴 인	김위상 의원
회 답 일	2025.6.2.
추계번호	25B1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u>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u>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u>설정하려는</u>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u>의견을 들어야 함</u> (제3항)	의무규정
		사용자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삭제>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퇴직연금사업자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u>]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권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제3항 신설)	의무규정
5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삭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삭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삭제>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삭제>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함(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함(제3항 신설)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제4항 신설)	의무규정
8	안 제14조(가입기간)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제2항 후단 삭제)	재량규정
9	안 제25조(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1항)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다만,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3.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재량규정
11	안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의무규정
12	안 제48조(과태료)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3·5·6·8	안 제2조(정의) 안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안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안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안 제14조(가입기간)	—	• 미대상 － 현행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제도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두 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함¹⁾ －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년을 평균하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	• 미대상 －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7조(수급권의 보호)	—	• 미대상 － 현행법은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여금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정해진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7	안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 미대상 －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미설정할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²⁾,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³⁾,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개정 2021.4.13.>)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9	안 제25조(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 미대상 － 현행법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개정안은 IRP 가입 대상을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재정의 추가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0	안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11·12	안 제46조(벌칙) 안 제48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⁵⁾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안 제34조)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⁶⁾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추진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 및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추진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의 추진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5)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6) 개정안의 시행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다만,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
 3.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 변화는 장래에 추진할 세제 지원 및 재정사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⁷⁾에 근거하여 퇴직연금연구센터운영 사업⁸⁾을 추진 중임

[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재정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련 조문	세부사업명	사업 개요	2025년도 예산
§34②	퇴직연금연구센터 운영	· (사업목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장·단기 정책수립을 지원 · (사업내용) 국내외 제도 연구, 민간협력체계 구축, 통계분석 지원,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수행 등	317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7)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 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 사업의 내역사업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